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679
----------	-----

제출년월일 : 2001. 2. 5.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안 제3조)

가. 다음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단, 숙박시설, 단란주점, 주점영업에 한한다.)

-학교주변 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단,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50미터 이내인 지역)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인 지역
(단, 숙박시설에 한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또는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

나.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할수 있는 행위)

4. 입법예고 : 결과 의견내용 없음 2000. 12. 18 ~ 2001. 1. 7 (20일간)

5.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지목이 대지로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이하 “위락·숙박시설 등”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7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2.“휴게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을 말한다.
- 3.“일반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 4.“단란주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의 단란주점을 말한다.
- 5.“주점영업”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의 주점영업을 말한다.
- 6.“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 7.“설치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지목이 대지로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 8.“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쌓인 구역을 말한다.
- 9.“유하거리”라 함은 하천, 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 10.“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라 함은 과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대지간 최대거리가 200m 이내로 상주하는 가구가 10호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11.“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단, 숙박시설, 단란주점, 주점영업에 한한다.)

라. 학교주변 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단,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50미터 이내인 지역)

마.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인 지역(단, 숙박시설에 한한다.)

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사.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또는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위락·숙박시설등으로 완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존 건축물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규모 내에서 종전용도에 한하여 대수선 또는 개축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의 위락·숙박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3조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업종 및 영업자에 한하여 동일인이 설치할 경우 기존의 허가면적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단, 보상협의 또는 수용후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

③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1997년 9월 11일 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하고자 할 경우 제3조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제한)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도시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

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제한지역을 고시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그 제한지역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지역 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고시된 제한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군 공보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다음사항을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위치 및 범위(1:25,000도면에 표시, 열람용 1:50,000도면 비치)

3. 행위의 제한내용 및 지번별 조서 등

제6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지역주민 대표 3인 이내

2. 환경·도시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교수 4인 이내

3. 관계공무원 3인 이내

② 제1항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거리의 환산) 설치 가능한 지역의 거리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경계 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1. 지역, 지구,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8조(통계자료 기준) 각종 통계자료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한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타 관련법에 의거 인가, 허가, 승인을 득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